

|           |                   |      |
|-----------|-------------------|------|
| 의안번호      | 제호                | 의결사항 |
| 의결<br>연월일 | 2024. . .<br>(제회) |      |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제출자    | 국무위원 ○○○<br>(환경부장관) |
| 제출 연월일 | 2024.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과 초등학교의 체육관에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주를 확대하고자 하며, 「환경분쟁 조정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는 등 내용의 「환경보건법」이 개정(‘24.3.19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어린이활동공간 대상 추가(안 제1조의2)

「환경보건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초등학교의 실내체육관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

나. 환경책임보험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신설(안 제7조의3)

환경책임보험의 약정 및 보험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검토·심의사항 및 위원회 구성 요건 신설

다.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사항 추가 및 신설(안 제22조의제3항제1호 및 제5호)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마련 권한과 환경유해인자의 종류·유해성 목록에 대한 고시 권한을 추가로 위임 등 위탁 조항 신설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항 삭제 및 신설(안 제22조의2 제4호 및 제8호)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제4호를 삭제하고,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정보제공 및 열람에 관한 조항 등 신설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4호 중 “교실 및 학교도서관”을 “교실, 학교도서관 및 체육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영업소”를 “영업소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소”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환경책임보험위원회) ① 환경책임보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로 환경책임보험위원회를 둔다.

1. 환경책임보험의 약정에 관한 사항
2. 보험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보험가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환경책임보험 관련 환경오염피해 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경오염 피해 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과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환경오염피해의 원인과 관련 있는 환경·안전 관계 법

령 및 인허가 조건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사항

6.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열람에 관한 사항

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이하 “손해조사등”이라 한다)의 실시요구 및 환경부 직권 손해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환경책임보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의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환경책임보험 관련 공무원

2. 법학교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 법률 전문가

3. 환경책임보험, 환경보건 또는 법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⑤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 및 심의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 제목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제1호 중 “위해성평가”를 “위해성평가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마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목록에 대한 고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제22조의2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7조의3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대한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무

별표 2 제4호나목 중 “기생충란”을 “기생충 및 기생충란”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4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의3 및 제22조의2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특례) ①부칙 제1조 단서 전단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설치된 제1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초등학교 체육관에 대해서는 2032년 9월 1일부터 법 제23조를 적용한다.

②부칙 제1조 단서 전단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설치된 제1조의2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에 대해서는 2029년 9월 1일부터 법 제23조를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의2(정의) 「환경보건법」<br>(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br>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br>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br>말한다.                      | 제1조의2(정의) -----<br>-----<br>-----<br>-----.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br>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u>교실</u><br><u>및 학교도서관</u>                                                | 4. ----- <u>교실,</u><br><u>학교도서관 및 체육관</u>                                                         |
| 5.·6. (생 략)                                                                                                  | 5.·6. (현행과 같음)                                                                                    |
| 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br>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br>대상어린이제품(완구만 해당<br>한다)을 어린이에게 놀이로<br>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br>자의 <u>영업소</u> | 7. -----<br>-----<br>-----<br>-----<br>-- <u>영업소 중 환경부장관이</u><br><u>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소</u>              |
| <신 설>                                                                                                        | 8.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br><u>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u><br><u>집단지도실</u>                                      |
| <신 설>                                                                                                        | 제7조의3(환경책임보험위원회) ①<br><u>환경책임보험에 대한 다음 각</u><br><u>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u><br><u>한 전문위원회로 환경책임보험</u> |

위원회를 둔다.

1. 환경책임보험의 약정에 관한 사항

2. 보험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보험가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환경책임보험 관련 환경오염 피해 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경오염 피해 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과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환경오염피해의 원인과 관련 있는 환경·안전 관계 법령 및 인허가 조건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사항

6.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열람에 관한 사항

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에 따른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이하 “손해조사

등”이라 한다)의 실시요구 및  
환경부 직권 손해조사의 실시  
에 관한 사항

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환경책임보험위원회는 위원  
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  
구하고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의 환경보건 관  
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  
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  
촉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  
업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환경책임보험 관련 공무원

2. 법학교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                                               |                                                                                                                                                                                                                                                                                                                                                                                                  |
|-----------------------------------------------|--------------------------------------------------------------------------------------------------------------------------------------------------------------------------------------------------------------------------------------------------------------------------------------------------------------------------------------------------------------------------------------------------|
|                                               | <p><u>사람 등 법률 전문가</u></p> <p><u>3. 환경책임보험, 환경보건 또는 법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u>④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u></p> <p><u>⑤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⑥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 및 심의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u>⑦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u></p> |
| 제16조( <u>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u> ) ①·② (생략) | 제16조( <u>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u> ) ①·② (현행과 같음)                                                                                                                                                                                                                                                                                                                                                |
|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                            |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                                                                                                                                                                                                                                                                                                                                                                               |

탁) ① 삭 제

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1의2. ~ 4. (생 략)

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6. · 7. (생 략)

④ ~ ⑧ (생 략)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2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시·도지사의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

탁)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 위해성평가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마련

1의2.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위해성 목록에 대한 고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6. · 7.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  
-----

는 사무로 한정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3. (생략)

4. 법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 조사의 청원에 관한 사무

5. ~ 7. (생략)

<신설>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5. ~ 7. (현행과 같음)

8. 제7조의3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대한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무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
| 연 락 처       | (044) 201 - 6754 |